

투자위험보증사업(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) 업무방법서

제 정 : 2006. 11. 23

1차 개정 : 2010. 7. 6

2차 개정 : 2012. 3. 2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업무방법서(이하 “방법서”라 한다)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2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방법, 보증기간,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[한국무역보험공사](#)(이하 “공사”라고 한다)의 업무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방법서에서 "투자회사"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.
- ② 이 방법서에서 "투자거래"라 함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
- ③ 이 방법서에서 “담보대상거래”라 함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거래 중 보험인수 대상거래를 말한다.
- ④ 이 방법서에서 “보증자금”이라 함은 시행령 제12조7 [제4항](#)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재원을 말한다.

제3조(방법서의 변경) 이 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[지식경제부장관](#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요율서) 공사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보험의 종류별로 요율을 정한 보험요율서를 작성하여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[지식경제부장관](#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방법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 방법서가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이를 정한다.

제2장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

제6조(보험의 목적)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회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약관을 정하여 운영한다.

제7조(보험계약의 내용)

- ① 공사는 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보험의 종류별로 담보하는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③ 보험의 종류별로 보상할 구체적인 손실의 범위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④ 보험기간은 예정 투자기간으로 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공사는 담보대상거래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초과수익거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담보대상거래의 제한) 공사는 투자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거나 기타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의 담보대상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9조(보증자금 운용배수) 공사는 다음산식에 의한 보증자금 운용배수가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을 운영하여야 한다.

$\text{보증자금 운용배수} = \text{유효계약액 합계}^1 / \text{보증자금의 잔액}^2$
--

- 1. 만기미도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및 미지급보험금의 합계
- 2. 보증자금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(이월결손금을 차감)한 금액

제10조(보험요율) 보험요율을 정할 때에는 국가신용도, 피보험자원개발사업의 평가등급, 보험기간 등 위험요소를 감안할 수 있으며, 공사는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할증요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재보험) 공사는 보험계약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을 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손실방지·경감조치)

- ① 공사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실방지·경감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손실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13조(보험금의 가지급) 공사는 투자계약등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고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사에 의한 권리행사) 공사는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채권행사를 스스

로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채권행사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같다.

제15조(보험대위)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한 해외 자원개발펀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16조(회수의무)

-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권리행사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보험금의 반환)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채권의 보전)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장 투자위험보증계정의 관리 및 운용

제19조(기금의 관리 운용) 공사는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방법서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이 방법서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방법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